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0. 27.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2021년 10월 8일

나. 발 의 자: 박정자 의원 외 5명

다. 회부일자: 2021년 10월 13일

라. 상정일자: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2021. 10. 2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박정자 의원)

가. 제안이유

❍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 법령 및 준용규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 안 제6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원배)

○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내용은

가.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 안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변경하였고,
- 안 제2조제1호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로 변경하였으며,
- 안 제2조제2호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4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40조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제1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으로 변경하였으며,

나.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음.

○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개정(2013. 5. 22.)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법적 적합성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정자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6

발의년월일: 2021년 10월 일
발 의 자: 박정자 의원 외 5명

1. 제안이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및 준용규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 안 제6조)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2021. 10. 6. ~ 10. 12.)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 중 일부 공사에 대한 감독(감리)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한 100억원미만”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200억원 미만”으로, “부분책임감리대상공사로”를 “부분책임감리대상 공사로 서울특별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제2조 각호의 1”을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하천관련공사”를 “하천 관련 공사”로 한다.

2. “감독업무”라 함은「건설기술 진흥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는 이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을 “대한 감독업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으로, “행정기관·법인·단체에게”를 “행정기관·법인·단체에”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내지 제16조”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부터 제21조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로,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이”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 중 일부공사에 대한 감독(감리)업무를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 중 일부 공사에 대한 감독(감리)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규모공사“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한 100억원미만의 공사로써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대상공사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 2. “감독업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4의 규정에	제2조(정의) ----------. 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200억원 미만---------- 부분책임감리대상 공사로 서울특별시 ----------. 2. “감독업무”라 함은「건설기술 진흥법」제40조 및 같은

의한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에 관한 업무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를 말한다.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3. “주요시설물공사”라 함은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3.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치수공사”라 함은 하천 제내외지의 각종 시설물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하천관련공사를 말한다.	6. ----------하천 관련 공사-----.
제4조(업무의 위탁) 소규모공사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는 이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또는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업무의 위탁) ----------각 호의 어느 하나----------대한 감독업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행정기관·법인·단체에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	제6조(준용규정) ----------

정한 사항 이외에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내지 제16조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에 소규모공사의 감독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준용규정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부터 제21조까지의 ----------. ----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8조부터 제10조까지---------- ----------.